

• 한시 생계지원이란?



기준 복지제도나 코로나19
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

한시 생계비(1호)를 지원합니다.

가구구성
'21. 3.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

소득기준

2019~2020년 대비 현재('21. 1.~5.) 소득이 감소하여
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인 경우

(단위: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
기준 중위소득 75%	1,370,873 4인	2,316,059 5인	2,987,963 6인
	3,657,218	4,318,030	4,971,452

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세대주만 신청 가능(휴대전화 본인인증)
'21. 5. 10.(월) ~ 5. 28.(금) 22:00
홀짝제(출생연도 끝자리)
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
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신청 가능

'21. 5. 17.(월) 09:00 ~ 6. 4.(금) 18:00

• 지원대상

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,
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

취약계층 가구*

*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금, 소득감소, 기준중위소득 75%
이하, 재산 6억원 이하(대도시)
_ 21. 3. 1. 기준 주민등록가구

○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

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

2019~2020년 대비 현재('21. 1.~5.)
소득이 감소한 가구

(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일반택시기사 급고용안정지원금,
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, 버팀목지금플러스, 소득안정
지원자금, 피해농업인지원, 피해어업인지원, 피해임업인
지원,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)

• 신청방법 및 결정

[집중 신청기간 운영]

'21. 5. 17.(월) ~ 5. 28.(금)

지급 우선순위

1가구 / 50만원 / 1회 지급

* (농어업인 경영지원)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
바우처(30만원) 사업 중복대상자는 “차액(20만원)
지급 가능”

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, 부득이 지급
결정 우선순위(본인 작성 소득(예출)감소신고서를 제출한
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
자료 조회 결과 재산기액이 적은 가구)를 적용할 수 있음